

의안번호	제 91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1월 2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총 정 원 : 4,672명 → 4,700명 (+28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809명 → 1,821명 (+12명)
 - 소방공무원 정원 : 2,728명(변동 없음)
 - 교육공무원 정원 : 43명(변동 없음)
 - 의회사무처 정원 : 76명 → 89명 (+13명)
 -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6명 → 19명 (+3명)
-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안 별표 2)
 - 6급 : 35% 이내 → 35.5% 이내
 - 8급·9급 : 4.5% 이상 → 4% 이상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- 일반직 : 1,657명 → 1,684명 (+27명)
 - ▶ 5급 이하 (+28명), 전문경력관(△1명)
 - 연구직 : 199명 (변동없음)
 - ▶ 연구관 (△1명), 연구사 (+1명)
 - 지도직 : 30명 → 31명 (+1명)
 - ▶ 지도사 (+1명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,672명”을 “4,7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809명”을 “1,82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중 “76명”을 “8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16명”을 “1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2]

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
비 율	6% 이내	19% 이내	35.5% 이내	34% 이내	4% 이상	1.5% 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20% 이내	80% 이상	26% 이내	74% 이상

3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2% 이내	4% 이내	10% 이내	9% 이내	18% 이내	30% 이내	27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34% 이내	26% 이내	10% 이내	10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
※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4,700	-					
정무직 계	3	1					2
도지사	1	1					
위원장	1						1
상임위원	1						1
일반직 계	1,684	-					
1~2급	1					1	
2~3급	2	1	1				
3급	12	10		1		1	
3~4급	2	2					
4급	76	50	8	5	7	5	1
5급이하 소계	1,575	-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	-					
별정직 계	12	-		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-					
연구직 계	199	-					
연구관	32			31	1		
연구사	167	-					
지도직 계	31	-		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5	-					
소방직 계	2,728	-					
소방정	17	5		12			
소방령이하	2,711	-					
교육공무원 계	43	-					
총장	1			1	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전임강사	31			31			
조교	11	-	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4,67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809명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<u>76명</u></p> <p>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<u>16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4,700명</u>----- <u>0명</u>----- --.</p> <p>1. ----- <u>1,821명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89명</u></p> <p>5. ----- <u>19명</u></p>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개정 사유

- 원활한 조직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정원조정 내역 (안 제2조)
 - 총정원 : 4,672명 → 4,700명(+28명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증원 28명(일반공무원 28명, 소방공무원 0명)
- 나. 추 계 결 과 : 인건비 12,470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세 출	12,469,410	2,425,024	2,458,974	2,493,400	2,528,308	2,563,704
인건비(일반공무원)	12,469,410	2,425,024	2,458,974	2,493,400	2,528,308	2,563,704
인건비(소방공무원)	0	0	0	0	0	0

※ 매년 임금인상률 1.4%(예상치) 적용 계산

6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민영완

관계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